

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정오표

페이지	오(인쇄내용)	정(수정내용)
p.20(박스)	※ <u>맞벌이 가정 아동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</u> ● 원칙적으로 아동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는 가구의 자녀 - 취업의 원칙적 정의 : 1일 8시간 이상(점심시간 포함), 월 20일 이상 근로 -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● 취업증명 :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- 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·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(세무서) 중 1부. - 신규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1년미만)는 소득신고접수증(세무서)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 중 1부. *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	※ <u>맞벌이 가정 아동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</u> ● 원칙적으로 아동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는 가구의 자녀 - 취업의 원칙적 정의 : 1일 8시간 이상(점심시간 포함), 월 20일 이상 근로 -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(직업훈련생, 대학원생 등) 포함 ● 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중 1부(필수) 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(고용지원센터),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·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고용·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● 대학원생 : 재학증명서 1부 ● 직업훈련생 :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·수료증(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),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(전국고용센터장, 새일센터장, 자치단체 등 명의) 중 1부 ※ 시설 이용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(서류상 확인) ● 자영업 : 사업자등록증(필수)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 1부 ※ 신규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)는 소득신고증빙서류(세무서 접수증 등)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 중 1부 *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*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※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)와 매출증빙자료(농산물 매출계약서, 판매증명서 등) 중 1부

페이지	오(인쇄내용)	정(수정내용)
p.66	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중 생활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여 지원 - 기본급여 지원 기준은 1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여 1,500천원으로 함 * 30인 이상 시설의 생활복지사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급여 동일 적용 - 단, 운영주체의 전입금, 후원금, 지자체 별도지원 등 재정범위에 따라 경력 인정 및 추가지원 가능	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중 생활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여 지원 - 기본급여 지원 기준은 1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여 1,500천원으로 함 * 30인 이상 시설의 생활복지사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급여 동일 적용 - 단, 운영주체의 전입금, 후원금, 지자체 별도지원 등 재정범위에 따라 경력 인정 및 추가지원 가능 ● 정부 보조금 인상분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기본급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- 생활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여 지원 기준 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시설장에 대한 기본급여 지원 기준도 마련 예정 ※ 종사자 처우개선 정도를 3기('18년~) 시설평가 지표에 반영 ● 보조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 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시설도 기본급여의 90%(월135만원)이상 및 전년도 보수(기본급여 + 제수당) 보다 높게 지급하여야 함 * 예) 15년 보수(기본급여 135만원 + 토요운영 등 제수당 20만원) → 16년 보수(기본급여 140만원 + 토요운영 등 제수당 20만원)
p.90	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	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※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같음 가능